

수신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335개소 대표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시행 안내

1.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이 2021. 7. 23(금) 개정·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중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제14조(모니터링),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2)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중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3) 사회복지자원봉사 비대면 봉사활동 실적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은 VMS 홈페이지에 모집글을 게시하고, 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후 관리센터 인증요원에게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나. 개정 지침 확인방법

-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사업지침 신규대비표, 사업지침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복지자료실-문서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담당자 **고주희**

복지사업부장

사무처장 전결

협조자

시행 제사협 2021 - 1211 (2021. 7. 28)

접수

()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1112-1) / www.jejubokji.net

전화 (064)726-5786 전송 (064)702-3383 / jejubokji@hanmail.net / 공개